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2015.02.05

## 목 차

### 1. 석면이란?

### 2. 석면조사

### 3. 석면조사 내용

- 1) 석면조사 기관
- 2) 석면조사 대상
- 3) 석면조사 사진
- 4) 고형시료 분석 결과
- 5) 동일률질구역
- 6) 위해성평가
- 7) 석면조사 결과

### 4. 고형시료분석결과보고서

### 5. 석면지도

## 별 첨

\* 석면조사기관지정서(사본)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 1. 석면이란?

## ① 석면이란?

아스besto(ASBESTOS)는 그리스어로 '불멸의 불연'이라는 의미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시멘트, 철, 쇠 등 석재와 광물에서 제취된 석유모입과 금속화합물을로서 적강이 0.02~0.03 g/cm<sup>2</sup> 정도의 유연성이 있고, 강사상금속의 희귀한 극복성 유성의 광물이다.

석면은 전면산 광물群의 일종이며 크게 백석면, 갈색면, 밀 흰석면으로 구분되며, 뛰어난 단열성, 내화성, 험연성, 안정성, 경제성 등으로 건축자재, 보온단열재 및 신법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1997. 5. 31일(환경부령)에 피해 제로 폐조, 수입, 사용, 양도,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의 종류



백석면

갈색면

밀석면

간소탈라이트

트리플라이트

피타唬리아트

☞ Fig. 1- 석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면의 모습

☞ Fig. 2- 석면 분변의 풍경

## ② 석면 특성 및 분류

| 분류                 | 화학식                                 | 화학적 성질   | 특성   |
|--------------------|-------------------------------------|--|--|
| 사분석계<br>Serpentine | 크로스파이드(백석면)<br>Chrysotile           | Mg <sub>3</sub> Si <sub>2</sub> O <sub>5</sub> (OH) <sub>4</sub>                       | 우수·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br>전체 티콘 사용제한 2005. 5. 15일 |
|                    | 암모시아트(갈색면)<br>Amosite               | Fe <sub>2</sub> Mg <sub>5</sub> Si <sub>4</sub> O <sub>11</sub> (OH) <sub>2</sub>      | 우수·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br>전체 사용제한 2005. 5. 15일    |
|                    | 크로시오비트리아스본트<br>Crocidolite Asbestos | Ra,Rc <sup>2+</sup> Ta <sup>3+</sup> Si <sub>4</sub> O <sub>11</sub> (OH) <sub>2</sub> | 점진·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br>전체 사용제한 2005. 5. 15일    |
| 간접석계<br>Amphibole  | 안소탈리아트(밀석면)<br>Antigorite Asbestos  | Mg <sub>5</sub> Fe <sub>2</sub> Si <sub>4</sub> O <sub>11</sub> (OH) <sub>2</sub>      | 우수·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                            |
|                    | 트레오카리트(후진석)<br>Tremolite Asbestos   | Ca,Mg <sub>2</sub> Si <sub>4</sub> O <sub>11</sub> (OH) <sub>2</sub>                   | 우수·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                            |
|                    | 피타唬리아트(밀석면)<br>Pargasite Asbestos   | Ca,(Mn,Fe) <sub>2</sub> Si <sub>4</sub> O <sub>11</sub> (OH) <sub>2</sub>              | 우수·점진 노연성<br>기름고 무도재로 1997. 5. 31일<br>제로 폐조 및 유연성이 높음                            |

##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을 출입하게 되면 끝이 바늘되거나 얇으며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렴**, **종격증**, **석면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석면은 석면에 적합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사망률·사망률 증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석면과 관련된 질병

| 질병  | 내용   |
|-----|--|
| 폐렴  | 석면으로 인해 들어온 석면의 세포에 인체의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 종격증 | 금속처럼 깊숙히 몸을 침습하는 석면을 철과 같은 종격증과 함께 있는 종격증과 초기에 발생하는 종증입니다. |
| 석면증 | 석면암이나 흑색종과 같은 암세포를 일으키는 신체의 질증입니다.                         |

#### 폐기물의 배관



#### 수



#### 체 내부

【그림 2】(a)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면 성유를 조금이라도 들이마신 사람에게서 생기는 폐폐의 질증이다. 이 질증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의 비탄에 목숨까지 잃어도 계속 진행된다. 그 결과 폐로 인해 산소를 배우고 만다. 폐로 인해 유화되면 모세기관지가 끓어나고 홍증의 바운다. 특히 폐아래의 모세기관지 칸막이 확장에 따른 폐침증으로 보이기 때문에 폐침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 석면증비통 CT: 흉악비통



(b) 석면에 대한 막상증피증례

## 2. 석면조사

### 1.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의2]

#### ■ 석면조사

-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 (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양력을 조사 (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 ② 제 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조사대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 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 (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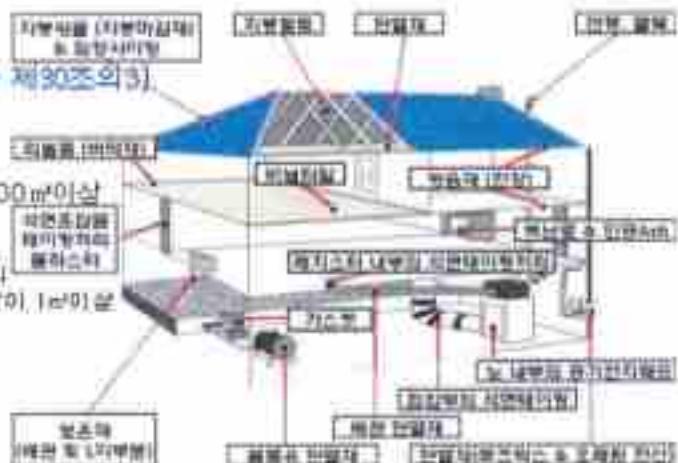
#### ■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 ● 건축물

- 일반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포재, 내화마루재 등 그 밖의 유사종도의 물질이나 차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주파의 합이 1㎞이상
- 파이프보온재: 길이 및 합이 80m 이상  
※ 파이프(비관)의 차를 포함하여 계산



####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호(학점신고용) 법 제 25호 제 1항에 따른 학점신고 대상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의2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에 따른 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의2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대상 대상을 실무하여야 한다.

제 24호(건축물을 철거·해체의 신고) ① 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라 법 제 11조 및 제 16조에 따른 해거를 철거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을 철거, 학점신고서와 허가증(사개폐서)을 실무하여야 하며, 철거 이전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의2 제 3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의2 제 3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기관을 추가로 실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석면조사 대상 중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석면조사 생략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의 3서식]

-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석면조사방법 및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 2012-9호]

- 고형사로 채취한 측면검사와의 공간의 기능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군집부분으로 구분
-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접촉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군집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협유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사로를 채취 후석
-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 복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 ※ 군집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종류   |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
| 본부재 또는 내장재                                     | 100㎡ 미만 3           |
|  | 100㎡ 이상 ~ 500㎡ 이상 6 |
|  | 500㎡ 이상 7           |
| 보온재  | 2㎥ 미만 또는 1㎥ 미만 1    |
|  | 2㎥ 이상 또는 1㎥ 이상 3    |
| 그 외의 물질  | 1                   |
| ※ 2개 이상의 고형사로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 혈유성이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정 |                     |

## II.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5]

석면해체 과정 작업 환경 후 작업장은 1m³당 주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0.004#/m³)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와 소유주들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즐겨하거나 해체하는데는 차이 된다.

※ 위반 시 5,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 ●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실내작업장에서 석면해체 체거 작업대상]

- 시료채취 필터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애파지 (Mixed cellulose membrane filter)로 공기중 입자성 물질 애파 채취

## ▶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별 각각 물질특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 면적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면적면적과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면적면적(A, m²) / 3 (소수점 이하 버림)

## ※ 계산 예

| 면적면적   | 최소 시료채취 수 |
|--------|-----------|
| 50㎡    | 3         |
| 100㎡   | 3         |
| 200㎡   | 4         |
| 500㎡   | 6         |
| 1,000㎡ | 9         |
| 5,000㎡ | 20        |

## III. 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시행일 2012. 4. 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독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1.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현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골골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골골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0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독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종교시설로서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의료시설로서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제 22조]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 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일차인 관리인을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알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자격증 [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경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IV.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제 30조]

-시행일 2012.4.29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 감리인 지정기준(「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V.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석면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함유자재 환경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해체하거나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 아래의 측정기관을 통하여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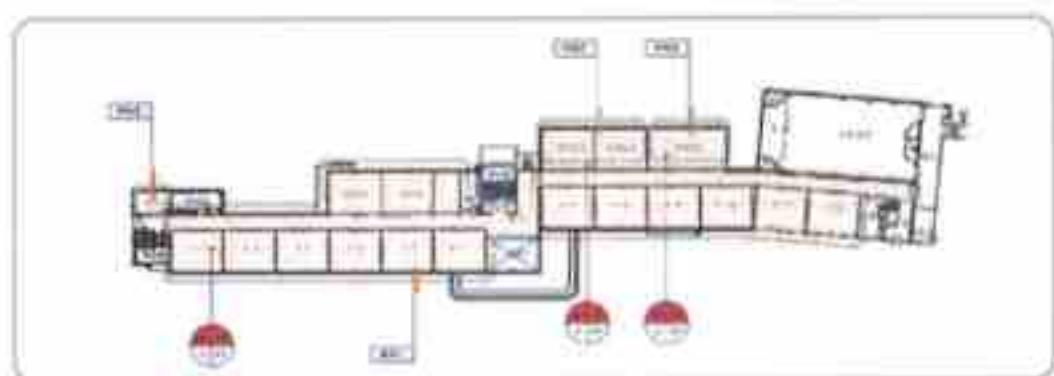


##### ▶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률을 측정대행업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VI. 석면지도(map)작성

- 석면지도(map)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물체 또는 자재 등을 조사하여 그 위치, 문호, 종류 및 면적 범위를 도면화로 나타낸 것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됨.
- 적용대상  
개인 및 산업건축물, 학교, 다중이용 시설(지하철, 도서관 등), 아파트, 관공서 외



### 3. 석면조사 내용

#### 1) 석면조사기관

|         |  |
|---------|--|
| 기관명     |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
| 대표자     | 박석현                                    |
| 사업자등록번호 | 141-81-33761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34번지 4층 402호              |
| 조사원     | 김용현 (대한석면관리협회 석면조사자 교육 수료, 2012-51-02) |
| 문석사     | 신나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도관리 합격자)        |
| 전화번호    | TEL. 031)949-7003 / FAX. 031)949-7020  |

#### 2) 석면조사 대상

|   |                     |                      |
|---|---------------------|----------------------|
|  | 건축물 명               | 도림초등학교               |
|   | 위치(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1     |
|   | 건축물 수               | 1                    |
|   | 구조                  | 칠근콘크리트               |
|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   | 지붕                  | 스러브                  |
|   | 면적(m <sup>2</sup> ) | 6,035.98             |
|   | 조사 일시               | 2015년 01월 27일        |
|   | 비고                  | 유지관리 차기위해 석면조사를 실시함. |

### 3) 석면조사 사진



석면조사 사진



2층 계단실



2층 화장실



2층 교무실



2층 소회의실



2층 도서실



3층 복도



3층 Wee



3층 어학실



3층 E-V실



3층 화장실



3층 교실



3층 계단실

설현조사 사진



4층 복도



4층 연구실



4층 화장실



4층 교실



4층 예술실



5층 교실



5층 다목적실



5층 화장실



5층 E·V실



5층 미술실



6층 물탱크실



구령대

## 4) 고형시료분석 결과

| 시료<br>번호 | 시료채취구역            | 시료종류 | 분석 결과 |        | 식면<br>검출<br>여부 | 시료사진  |
|----------|-------------------|------|-------|--------|----------------|---|
|          |                   |      | 식민종류  | 합류량(%) |                |   |
| #1       | 자하1층 기계실<br>배관연결재 | 가스켓  | 백식면   | 20     | 식면<br>검출       |    |
| #2       | 1층 한동위회의실<br>천장   | 텍스   | 백식면   | 2      | 식면<br>검출       |    |
| #3       | 2층 도서실 천장         | 텍스   | 백식면   | 2      | 식면<br>검출       |   |
| #4       | 3층 2학년복도 천장       | 텍스   | 백식면   | 2      | 식면<br>검출       |  |
| #5       | 4층 연구실 천장         | 텍스   | 백식면   | 2      | 식면<br>검출       |  |
| #6       | 5층 6학년단초 천장       | 텍스   | 백식면   | 2      | 식면<br>검출       |  |

## 5) 동일물질 구역

| 번호 | 시료<br>번호      | 자자 종류 | 균질부분 구역              | 시료<br>개수 | 사진<br>(대표적인 사진첨부)  |
|----|---------------|-------|----------------------|----------|--|
| 1  | #1            | 가스켓   | 자하1층<br>기계실<br>배관연결재 | 1        |   |
| 2  | #2<br>~<br>#6 | 텍스    | 1층<br>화운위화의실<br>및 현장 | 5        |   |

## 6) 위해성평가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물리적 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 1) 비산성

| 항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br>(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 함유 지붕재) | 0  |
| 낮음 |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스러진다(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 1  |
| 중간 |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진다(예 : 보온재, 단열재)                 | 2  |
| 높음 |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된다(예 : 문무재, 부식된 지붕재)                  | 3  |

#### 2) 손상 상태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손상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  | 0  |
| 작은 손상 | 표면에 미미한 손상이 있거나 모서리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                          | 1  |
| 부분 손상 | 손상부위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10% 이하로 고르게 분포하거나,<br>25% 이하로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 2  |
| 심한 손상 | 손상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상<br>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 3  |

### 3) 석면 함유량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1  |
| 20% 이상 4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2  |
|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 3  |

### ○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 1)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중간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공조 냉동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품목실) | 1  |
|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밤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 2  |

#### 2)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중간  | 악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환기구 등)                           | 1  |
|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br>(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 팬이 설치된 지역) | 2  |

## 3)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중간  | 누수에 의한 손상은 없지만 파이프 또는 배관이 해당 건축자재 상부에 설치된 경우 | 1  |
| 높음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  |

## ○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 1) 유지 보수 형태

|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
| 없음    | 유지 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 0  |
|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 1  |
| 보통 교란 | 유지 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벨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 2  |
| 높은 교란 | 유지 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벨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 3  |

## 2) 유지 보수 빈도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거의 없음     | 0  |
| 낮음  | 1년에 1번 미만 | 1  |
| 보통  | 한달에 한번 미만 | 2  |
| 높음  | 한달에 한번 이상 | 3  |

###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거주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 1)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거의 없음   | 0  |
| 보통  | 10 인 미만 | 1  |
| 높음  | 10 인 이상 | 2  |

#### 2) 구역의 사용 빈도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부첨기척  | 0  |
| 보통  | 매주 사용 | 1  |
| 높음  | 매일 사용 | 2  |

#### 3)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
| 없음  | 1시간 이내        | 0  |
| 보통  |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 | 1  |
| 높음  | 4시간 이상        | 2  |

### ○ 위험성 등급

| 위험성등급 | 평가점수    |
|-------|---------|
| 높음    | 20 이상   |
| 중간    | 12 ~ 19 |
| 낮음    | 11 이하   |

## ○ 석면건축물의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2호)

### 가. 조치방법

| 위해성 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
| 높음     | 20 이상   | <p>&lt;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gt;</p> <p>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안전영향을 완벽히 차단 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p> <p>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p> <p>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p> <p>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폐쇄·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p>               |
| 중간     | 12 ~ 19 | <p>&lt;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존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gt;</p> <p>1) 손상에 대한 보수</p> <p>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p> <p>3)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p> <p>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폐쇄·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p> <p>5) 보수하여도 존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무려될 경우 제거 조치</p>   |
| 낮음     | 11 이하   | <p>&lt;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존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gt;</p> <p>1)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p> <p>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치속적인 유지관리</p> <p>3)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p> <p>4)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p> <p>5)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차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p> |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

-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위해성 평가 결과표

| 관리 번호 | 시료 번호 | 간접 차폐 | 위 치         | 물리적 평가   |          |            | 생성 가능성 평가 |        |        | 기후학 평가       |               |          | 인체 노출        |              |               | 위해성 등급 |
|-------|-------|-------|-------------|----------|----------|------------|-----------|--------|--------|--------------|---------------|----------|--------------|--------------|---------------|--------|
|       |       |       |             | 비단 성(점수) | 손상 생(점수) | 수분 함유량(점수) | 진동(점수)    | 기류(점수) | 누수(점수) | 유지 보수 흡수(점수) | 이론 또는 계주수(점수) | 승주 수(점수) | 주류 사용 반도(점수) | 주류 사용 시간(점수) | 위해성 평가 점수(점수) |        |
| 1 #1  | 1층    | 기느롯   | 기개설 배관변경제   | 1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             | 보통     |
| 2 #2  | 1층    | 벽스    | 한글위변의실 의 천장 | 1        | 1        | 1          | 0         | 0      | 0      | 1            | 0             | 2        | 2            | 2            | 10            | 보통     |
| 3 #3  | 2층    | 벽스    | 도서실 외 천장    | 1        | 1        | 1          | 0         | 0      | 0      | 1            | 0             | 2        | 2            | 2            | 10            | 보통     |
| 4 #4  | 3층    | 벽스    | 2학년예쁜 외 천장  | 1        | 1        | 1          | 0         | 0      | 0      | 1            | 0             | 2        | 2            | 2            | 10            | 보통     |
| 5 #5  | 4층    | 벽스    | 연구실 외 천장    | 1        | 1        | 1          | 0         | 0      | 0      | 1            | 0             | 2        | 2            | 2            | 10            | 보통     |
| 6 #6  | 5층    | 벽스    | 6학년난초 외 천장  | 1        | 1        | 1          | 0         | 0      | 0      | 1            | 0             | 2        | 2            | 2            | 10            | 보통     |
| 주차내용  |       |       |             |          |          |            |           |        |        |              |               |          |              |              |               |        |

석면암류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치속적인 유지관리

## 7) 석면조사 결과

|               |                    |        |   |
|---------------|--------------------|--------|---|
| 조사대상          | 도림초등학교             | 시료채취 수 | 6 |
| 석면의심자체        | 가스켓, 택스            |        |   |
| 분석결과          | <b>석면검출</b>        |        |   |
| 석면자체          | 가스켓, 택스            |        |   |
| 석면면적( $m^2$ ) | 5,002.4            |        |   |
| 비고            | 유지 관리 하기 위한 석면조사인. |        |   |



1> 용역명 : 도림초등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2> 조사기간 : 2015년 01월 27일

3> 석면조사기관 : 주식회사 국토석면환경연구원 (충부지발고용노동청 제2013-120002호)

### 4> 석면조사 범위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은 「도림초등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1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15년 01월 27일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5> 석면조사 결과

2015년 01월 27일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소속의 조사자가 경기도 구리시 이차산로 431 도림초등학교에 대해 건축물을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석면함유율질(ACM)로 의심되는 물질을 확인하여<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근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수」에 따라 총 6개의 해당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석면함유의심물질로 확인된 6개의 시료를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의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하1층 기계실 바란면검재로 사용된 가스켓과 천장재로 사용된 택스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석면함유 자재의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정기적인(6개월)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자재가 손상될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가 확인 되었을 경우 저희 연구원으로 링크 연락바랍니다.  
(031-949-7003,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석면함유자재 50m<sup>2</sup>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철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침 석면해체업체에 의하여 친절하셔야 합니다.

## 4. 고형시료분석결과보고서

## [고형시료 분석 결과보고서]

| No.  | KT150036-01                     |      |                  |               |              |  |
|--|---------------------------------|------|------------------|---------------|--------------|--|
| 분석기관   |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      | TEL:031-949-7003 |               |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  |
|  | 경기도 파주시 금광4길 34 4층 402호         |      | FAX:031-949-7020 |               |              |  |
| 분석자  | 신나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도관리 학격자) |      |                  |               |              |  |
| 건축물명   | 도량초등학교                          |      | 접수 일자            | 2015년 01월 15일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면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br>('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                                 |      |                  |               |              |  |
| 시료 번호  | 채취 장소                           | 시료종류 | 석면종류             | 함유율(%)        | 결과           |  |
| #1   | 지하1층 기계실                        | 가스켓  | 백석면              | 20            | 석면검출         |  |
| #2   | 1층 환문위희의실                       | 텍스   | 백석면              | 2             | 석면검출         |  |
| #3   | 2층 도서실                          | 텍스   | 백석면              | 2             | 석면검출         |  |
| #4   | 3층 2학년복선                        | 텍스   | 백석면              | 2             | 석면검출         |  |
| #5   | 4층 연구실                          | 텍스   | 백석면              | 2             | 석면검출         |  |
| #6   | 5층 6학년단조                        | 텍스   | 백석면              | 2             | 석면검출         |  |

■ 본 분석 결과는 법적인 소송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폐기 처분됩니다.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 5. 석면지도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1) 석면지도 그리기

- 가.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충분히 도면을 작성한다.
-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률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 2) 채취시로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로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로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 시료 번호 | 시료 채취 위치 | 건축 자재 | 동일 물질 구역 | 길이(m)/ 면적(m <sup>2</sup> )/ 부피(m <sup>3</sup> ) | 석면 종류 | 석면 함유량 (%) | 위해성 평가 점수 | 위해성 등급 | 관리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 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 창)
  - 아. 건물 외부 자. 그 밖의 위치
-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1. 슬레이트 2. 아스팔트 성글 3. 타트 4. 분무재 5. 내화피복재
  - 바. 텍스 사. 발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 타. 비닐창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가스켓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리. 석면사·석면포머. 이음재 빠. 접착제 서. 실링재어. 페인트저. 콘크리트저. 석고보드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 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배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3. 석면지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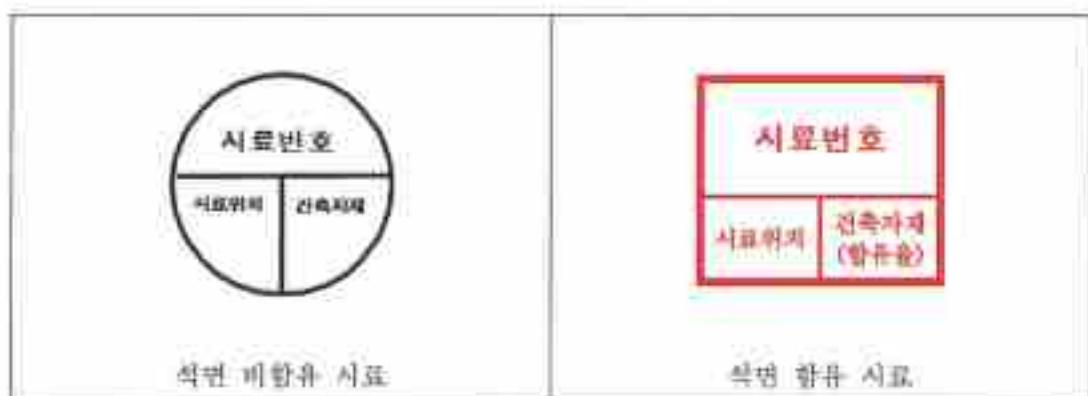


#### 비고

1. 채취시로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로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려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 그림 | 건축자재명 | 그림 | 건축자재명     | 그림 | 건축자재명    | 그림 | 건축자재명 |
|----|-------|----|-----------|----|----------|----|-------|
|    | 지붕재   |    | 바닥재       |    | 폐관재 (보온) |    | 전막이   |
|    | 천장재   |    | 분무재 (분실재) |    | 폐관재 (흡습) |    | 비석면   |
|    | 벽재    |    | 나트륨복재     |    | 기타물질     |    |       |

&lt;일러두기&gt;



&lt;건축자재 인식표&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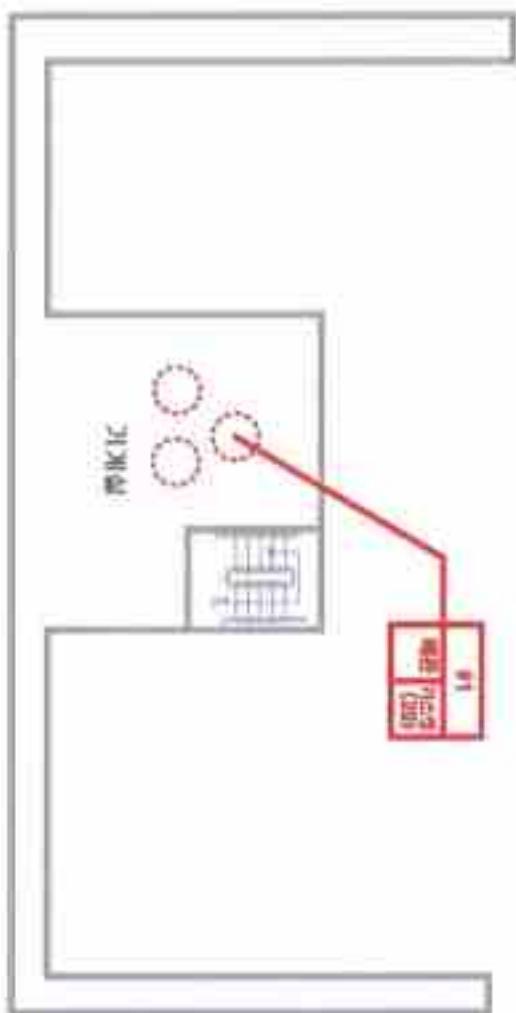
3. 지도 개요판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 『석면지도』



(주) 국토석면환경연구원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34번지 4층 402호 Tel : 031-949-7003 Fax : 031-949-7020

# 지하1층



| 시료번호 | 시료제작일 | 검출자재 | 동일률정구역 | 면적(m <sup>2</sup> ) | 석면<br>유무 | 석면형<br>태도 | 비석면<br>유무 | 판별방법                        |
|------|-------|------|--------|---------------------|----------|-----------|-----------|-----------------------------|
| #1   | 예전    | 가스켓  | 기계실    | 1                   | 비석면      | 20        | 4         | 비표본<br>보증<br>(대한-석면제작, 유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소재지            | 도립초등학교       |
|--------------------|--------------|
| - 경기도 구리시 애진면로 431 |              |
| 석면조사 분석기 [1]       |              |
| ⑧(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              |
| 도면번호               | KJ_150038-01 |
| 조사일                | 2015.01.27   |

| <p>The diagram illustrates a floor plan with various rooms and their dimensions. Key dimensions include: Room A (67.5m²) at the top right, Room B (101.5m²) in the center, Room C (33.0m²) at the bottom left, and Room D (23.0m²) at the bottom right. A red line indicates a boundary or path across the center of the floor plan.</p> |      |      |      |      |      |      |      |      |      |      |      |
|--|------|------|------|------|------|------|------|------|------|------|------|
| 구조번호   | 시로재해 | 건축재해 | 전체면적 |      |      |      |      |      |      |      |      |
|  |      |      | 전용면적 | 간접면적 | 임대면적 | 폐지면적 | 구조면적 | 운영면적 | 폐수면적 | 배기면적 | 기타면적 |
|  | 내수로  |      |      |
| 도면번호   | 내수로  |      |      |
| 조사일  | 내수로  |      |      |

**기타**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22층

23층

24층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

30층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

36층

37층

38층

39층

40층

41층

42층

43층

44층

45층

46층

47층

48층

49층

50층

2층



| 서로번호 |     | 서로번호 | 상호명 | 상호명 |
|------|-----|------|-----|-----|
| 서로번호 | 상호명 | 상호명  | 상호명 | 상호명 |
| 101  | 현대  | 102  | 현대  | 103 |
| 104  | 현대  | 105  | 현대  | 106 |
| 107  | 현대  | 108  | 현대  | 109 |
| 110  | 현대  | 111  | 현대  | 112 |
| 113  | 현대  | 114  | 현대  | 115 |
| 116  | 현대  | 117  | 현대  | 118 |
| 119  | 현대  | 120  | 현대  | 1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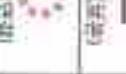
| 기록부 |     |     | 기록부 | 기록부 |
|-----|-----|-----|-----|-----|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11



경기도 구리시 03034 481  
식민총사로식기관  
 **국립** 한국전쟁기념관



KT(주) 국문번역장관구

4층



| 사건번호 | 시도명  | 신축지역 | 총법률면적    | 법적(m <sup>2</sup> ) | 사업<br>종류 | 사업<br>형태 | 사업<br>주체 | 관리방법           |
|------|------|------|----------|---------------------|----------|----------|----------|----------------|
| 47   | 전라북도 | 전주시  | 10,922.4 | 10,922.4            | 49.석면    | 2        | 10       | 석면<br>제거<br>사업 |
| 48   | 전라남도 | 전주시  | 10,922.4 | 10,922.4            | 49.석면    | 2        | 10       | 석면<br>제거<br>사업 |
| 49   | 전라남도 | 전주시  | 10,922.4 | 10,922.4            | 49.석면    | 2        | 10       | 석면<br>제거<br>사업 |
| 50   | 전라남도 | 전주시  | 10,922.4 | 10,922.4            | 49.석면    | 2        | 10       | 석면<br>제거<br>사업 |

| 건축물 소재지          | 도립초등학교       |
|------------------|--------------|
| 경기도 구리시 이자연로 473 |              |
| 석면조사표석기금         |              |
| 한국석면재활용협회        |              |
| 도립초등학교           | KT_150036-05 |
| 조사일              | 2015.01.27   |

# 5층



| 시설번호 | 시설제작 | 건축자체 | 동일물품구매 | 면적(m <sup>2</sup> ) | 설비<br>종류 | 설비<br>유형 | 설비<br>설정수 | 설비<br>설정 | 설비<br>설정               | 설비<br>설정               |
|------|------|------|--------|---------------------|----------|----------|-----------|----------|------------------------|------------------------|
| #0   | 한화   | 백스   | #-전기   | 1,001.3             | 전기면      | 2        | 10        | 보통       | 전기설비<br>설비<br>설비<br>설비 | 전기설비<br>설비<br>설비<br>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설명                        | 도면초록설명      |
|-----------------------------|-------------|
| 건축물 소재지<br>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1 |             |
| 천연초사분석기준                    |             |
| KTR 1주기 국토보안환경연구원           |             |
| 도면번호                        | 지도 1500W-06 |
| 조사일                         | 2015.01.27  |